두 수준의 공리주의 정당화 논변

강문석*

〈차 례〉

1. 문제제기
2.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상반성
3. 두 수준의 공리주의 정초
4. 두 수준 내 도덕원리의 외연과 그 정당화
  1)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
  2) 두 유형의 규칙공리주의
5. 맺는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덕판단과 도덕사유의 합리성을 추구한 헤어(Hare, R. M.)의 비기술주의 윤리학을 다룬다. 논리와 사실에 의한 도덕추론의 합리성을 추구한 헤어의 윤리학은, 보편적 처방으로부터 공리주의 추론으로의 이행을 논의한 후, 공리주의 추론의 정당화를 위해 도덕사유의 두 수준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두 수준론이 전일적인 일관성 있는 공리주의적 도덕사유 체계이기 위해선 두 수준 내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외연적으로 양립하고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어야 한다.

* 인하대학교, 철학박사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행위공리주의의 장점과 그 문제점, 그리고 행위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규칙공리주의의 장점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각각의 장점을 유지하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를 헤어가 정초해가는 핵심 논변을 고찰하여 보편적 처방주의 체계 내에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를 명확히 한 후,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론이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보편적 처방, 두 수준,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일반성, 구체성

1. 문제제기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도덕의 정당화에 대한 물음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선 어떤 원리를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원리의 정당화에 대한 물음은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도덕을 거부하는 무도덕주의(amoralism) 문제로 인하여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의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궁극적 정당화가 불가능한 물음이다. 도덕적이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존재론적 설명 장치를 도입하게 될 경우,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합리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덕의 본성으로서 실재하는 사실적 속성을 탐구하여 부합하게 기술해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거나 승인하는 합리적 의지의 성격을 밝히는 문제는 요원해진다. 반면에, 후자의 물음은 광신자(fanatic)나 이상주의자(idealist)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갖지만, 인식론적인 개념적·논리적 방식을 동원하여 도덕판단과 행위 사이에 합리적인 내적 동기를 밝힐 수 있기에 도덕에서 합리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영역에서 도덕판단과 도덕사유의 합리성을 추구한 헤어(Hare, R. M.)의 비기술주의(non-descriptivism) 윤리학을 다룬다. 헤어가 『도덕의 언어』에서 도덕의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결단'의 문제라고 선언했듯이, 비기술주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를 선택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대신에, 그는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도덕적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지의 본성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도덕의 논리적 규준을 규명하고서 그로부터 합리적인 도덕적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도덕원리나 규범을 발견하는 방식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도덕에 있어서 합리성의 문제로 본 것이다.

논리와 사실에 의한 제약을 통해 도덕추론의 합리성을 추구한 헤어의 윤리학은 공리주의 추론에 도달한다. 메타윤리학적 작업에서 규범윤리로 전환할 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새로운 공리주의를 제안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도덕추론에서 보편적 처방(Universal Prescriptivity, 이하 UP)의 논리가 왜 공리주의의 방식으로 이행하는지를 밝히는 문제로 집중된다. 도덕판단의 합리성은 언어적 직관에 의한 형식적 중립성을 담지하는 UP의 요구로부터 실질적인 도덕의 내용으로서 나와 타인의 동등한 선호의 사실을 고려하는 공평성(impartiality)의 요구로 확보되며, 그 방식은 공리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1)]

보편적 처방주의로부터 공리주의 추론으로의 이행을 논의한 후,

---

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강문석, 「헤어의 비기술주의에서 객관적 처방이 왜 가능한가?」,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72집 제2권, 2013, pp. 202-208을 참조.

헤어는 공리주의 추론의 정당화를 위해 도덕사유의 두 수준론(the Two-Level Theory)을 전개한다. 도덕사유에는 원리를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사용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원리를 요구하는 직관적인 도덕사유의 수준과 구체적인 원리를 요구하는 비판적인 도덕사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수준론이 전개되려면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두 수준론의 체계 내 행위공리주의(Act-Utilitarianism, 이하 AU)와 규칙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 이하 RU)가 서로 논리적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직관적 도덕사유 수준에서 요구되는 직견적인(prima facie) 일반 규칙은 그 정당화의 근거를 잃게 된다. 달리 말해서, 비판적 도덕사유는 직관적인 도덕사유에 대해 행사하는 인식론적 우선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두 수준론이 전일적인 일관성 있는 공리주의적 도덕사유 체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선 두 수준 내 AU와 RU가 외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가 정당화되는 논변을 다룬다. 이를 위해 우선, AU의 장점과 그 문제점을 논의한 후, AU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RU의 장점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AU와 RU 각각의 장점을 유지하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를 헤어가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살핀다. 『도덕사유Moral Thinking, 이하 *MT*』 이전의 『도덕의 언어Language of Morals, 이하 *LM*』과 『자유와 이성Freedom and Reason, 이하 *FR*』에서 두 수준론을 개진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편적 처방주의 체계 내에서 AU와 RU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를 검토한 후, AU와 RU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론이 전개될 수 있음을 보인다.

2.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상반성

추상화된 독단적 의무론의 교의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도덕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할 때, 공리주의는 도덕의 문제를 인간의 욕구 만족이나 행복으로 파악으로써 행위의 옳고 그름의 척도로서 '효용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를 내세운다. 어떤 행위가 유용하다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에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리주의는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이해하는 결과주의 도덕체계이다.

무어(Moore, G. E.)가 옳은 행위의 기준으로서 결과주의를 적극 주장한 이래로 공리주의는, 효용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위의 규칙에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AU와 RU로 준별된다. AU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적 행위들에 효용의 원리를 직접 적용하여, 그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된다."[2] 하지만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나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데도 그저 규칙에만 매몰 될 경우에 AU라면 피할 수도 있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스마트(Smart, J. J. C.)가 예시한 '무인도의 약속(desert island promise)'이다. "나는 무인도에서 죽어가는 한 친구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떤 경마클럽에 전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 나는 구출되어 돌아와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병원에 그 돈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심한다."[3] 스마트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갖는 결심이 약속을

---

2) 황경식,『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5, p. 78 참조.

3) Smart, J.J.C., "Extreme and Restricted Utilitarian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6 (October, 1956); 임덕준, 「결과주의로서의 공리주의」,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철학연구』12집 제1권, 1988, p. 190 참조.

지키는 것보다 더한 선을 결과하며, 다자가 아닌 약속자와 피약속자 2인만 관련되므로 나의 약속 위반이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AU를 옹호한다.

이렇듯 AU는 효용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가능한 행위의 대안들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의 기대효용을 낳는 행위를 하도록 지도한다. 즉, 어느 상황에서든 최대의 기대효용을 갖고서 실제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행해야 할 옳은 행위로 확정된다. 때문에 AU에서는 원리 간에 충돌이나 대립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AU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AU에서는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반하는 역직관성(counter-intuitiveness)이 나타난다. AU의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비도덕적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그르지 않고, 행위의 그름은 오직 그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을 뺀 선을 계산해 볼 때, A와 B가 동일하다. 행위 A는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혹은 정의롭지 못함 등을 내포하는 데 비해, B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일관된 행위공리주의자는 A와 B가 똑같이 옳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가 옳고 A가 그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A가 B보다 약간 큰 것을 결과한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에 행위공리주의자는 A가 옳고 B는 그르다고 해야만 한다."[4]

둘째, AU는 매 상황 공리주의적 편익(cost-benefit)을 계산한다. 이때, 우리의 불합리한 무지·편견·부주의·공정성의 결여·시간과 정보의 부족 등이 현명한 결과 예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공리주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비효용을 낳을 가능성

4) Frankena, W. K., *Ethics*, 2nd Englewood Cliffs: Prentic-Hall, Inc., 1973, p. 36.

이 커진다. 이런 점에서 AU는 자멸성(self-defeating)을 띠게 된다. AU의 자멸성은 호치슨(Hodgson, H.)과 워녹(Warnock, G. J.)이 행한 AU에 대한 비판을 통해 드러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AU는 약속이행과 같은 사회의 기본제도를 훼손시킨다. 비공리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도덕규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약속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위공리주자인 사회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약속을 한다고 해보자. 행위공리주의자로서 나는 약속 이행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행위공리주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은, 내가 약속 이행 자체를 의무로 여겨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인지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내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으며 약속 자체에 덜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이러한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때 상대방은 지금이 내가 그런 경우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나의 약속을 덜 신뢰한다. 이번에는 이것이 상대방의 반응이라고 인식하여 전보다 덜 양심의 가책을 나는 느낀다. 이러한 과정이 연속됨에 따라 공리주의는 도덕적 의무를 훼손시킨다.[5] 행위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까닭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다.

셋째, AU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공감하여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정서(vicarious affects)의 문제에서 내적 모순을 보인다. AU의 최대행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대리정서를 무시하는 반면에, AU의 공평(impartiality)의 원리는 우리에게 대리감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스(Williams, Bernard)는 생화학전 연구 작업을 제의받은 과학자의 딜레마를 AU의 내적 모순을

5) Hudson, W. D., *Modern Moral Philosphy,* Macmillan Press, 1983, pp. 394-395.

지적하는 예로 든다. 과학자는 생화학전을 양심적으로 반대하지만, 생화학전 연구를 맡는다면 그의 가족의 생활은 더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 말고는 그의 가족을 행복하게 할 다른 방도가 없다. 이 경우, 과학자는 그 일을 맡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최대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자가 양심적 의견을 지키는 기획과 단지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바라는 기획이 갖는 효용을 비교해 볼 때, 전자가 반드시 후자보다 더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 개인을 도덕적 행위자로서 타인과 동등하게 간주해야 하는데도, 그의 삶을 건설하는 기획이나 태도를 다른 여러 만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경우, 공리주의는 핵심을 잃게 될 것이다.[6]

이와 같이 AU가 내포하는 역직관성과 자멸성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규칙공리주의(RU)가 등장한다. RU는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인지를 찾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규칙을 찾는다. 즉, RU는 효용의 원리를 행위가 아닌 대안이 되는 규칙들에 적용하여 최대 수용 효용(acceptance utility)을 갖는 공리주의적 규칙을 산출한 다음, 개별 행위가 그 규칙에 따를 때만 옳은 행위가 된다. RU가 AU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RU에 의한 규칙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AU에 의한 행위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보다 전체적으로 더 나은 집합적 결과를 갖는다. 그 규칙이 "효용을 계산할 시간 부족과 미래의 결과 예측하는 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은 판단의 오류 방지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안정적 기대 등을 산출"하기 때문이다.[7]

---

6) *Ibid.*, pp. 392-394.

7) Shaw, William H., *Contemporary Ethics: Taking Account of Utilitarianism*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 Inc., 1999, pp. 145-146.

둘째,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들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RU에서 규칙은 AU에서처럼 규범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대략적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도덕규칙으로서 규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U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내재한다. RU는 수용 효용의 극대화를 충족시키는 규칙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정되므로 AU의 난점에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규칙들이 대립할 때 어느 규칙이 우선하지를 판정해 줄 방식을 적극 제시하지 못한다. 모든 행위와 상황을 포괄하는 효용 극대화의 규칙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칙들이 대립 시, RU 체계 내에서 그 해결을 위한 선택지는 규칙을 우선시키느냐 아니면 효용을 우선시키느냐 두 가지이다.

먼저 RU가 공리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기존의 규칙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효용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 규칙은 규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규칙이 효용의 원리를 충족시키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규칙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수정하여 더욱 구체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이 너무 구체화되면, 그 규칙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타당한 규칙으로 제한될 것이고, 결국에 RU와 AU의 실질적인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규칙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한, RU는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요구되는 규칙의 구체화를 거부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RU는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불가능해져, 공리주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비공리적인 의무론의 체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AU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RU의 시도는 규칙 간에 대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AU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독단적 교의로 거부했던 의무론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윤리이론으로서 공리주의의 성패는 AU와 RU의 이론적 대립을 조화시킴으로써 공리주의의 난점인 역직관성과 자멸성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3. 두 수준론의 공리주의 정초

헤어는 AU 체계 내에서 RU의 장점을 확보하는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론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AU와 RU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사고의 비판적 단계와 직관적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일단 두 단계가 구별되면, 두 단계의 장점이 결합된 공리주의가 가능해진다."[8]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이한 수준의 도덕원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달리 말해서, 상이한 수준에서 우리가 내리는 실질적인 도덕판단이 달리되는 논리적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가? 헤어는 *MT*에서 실질적인 도덕판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9]

(1) 세부적인 특정 상황에 맞추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일러주는 "**무제한의 구체성**(unlimited specificity)의 비판적 도덕원리들"

(2) 보통 도덕규준(codes)에서 발견된 부류의 "**제한된 구체성**(limited specificity)의 직관적 혹은 직견적 원리들"

---

8) Hare, R. M., *Moral Thin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81, p. 43. 이러한 헤어의 주장은 그가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을 전개한 후 그것을 공리주의에 적용함으로써 RU와 AU의 장점을 절충해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두 수준론은 공리주의적 사유와 그 요구에 따라 적합한 도덕원리를 발견해내는 논의이다. 보편적 처방주의에서 공리주의 추론으로의 이행이 가능한 이후에야 그러한 공리주의 추론의 정당화를 위한 두 수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9) *Ibid*., pp. 40-41.

(3) 개별 사태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2)의 원리들에 기초하는 "직관적 도덕판단"

헤어는 이런 원리의 수준들에 따라 도덕사유의 두 수준을 구별한다. 도덕사유는 도덕추론의 규준으로서 UP의 논리를 사용하여 (1)과 (2) 부류의 도덕원리들이 되는 비판적 도덕사유 수준, 그리고 (2) 부류의 원리들을 사용하여 일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3) 부류의 직관적 도덕사유 수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수준의 구별을 행위/규칙공리주의 층위에서 살필 때, 두 수준은 RU 방식에 따른 (3) 부류의 도덕원리들을 요구하는 직관적 수준, 그리고 이런 직관적 원리들을 선택하고 그것들 사이에 대립이 있을 때 판정해 주는 AU 방식에 의한 (1)과 (2) 부류의 비판적 수준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두 수준의 구별을 원리의 사용과 요구의 층위에서 살필 때, (1) 부류의 무제한 구체성의 도덕원리들은 순수 AU 방식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2) 부류의 제한된 구체성의 도덕원리들은 단순한 대략적 규칙이 아닌, 도덕의 논리적 규준으로부터 RU에 의해 확인되는 직견적 원리들이다. 이것들에 기초하여 일상에서 (3) 부류와 같은 직관적 도덕판단이 이루어진다.

헤어는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을 「윤리이론과 공리주의」에서 맨 처음 제기하였지만, 이미 *LM*에서부터 그 싹이 보이며 *FR*에서 개진되어 *MT*에서 충분히 논의한다. 그는 *LM*에서 메타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원리를 결단하는 문제, 곧 원리에 대한 자기교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규범 차원의 논의인 도덕사유론의 단초가 엿보인다.

> 가르치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에 원리에 대한 자기교수가 필요하다. … 가장 기본적인 교수 외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스스로 원리를 결단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배운 원리를 검사하여 특정한 유형의 사태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

> 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원리처럼). 처음에 우리를 가르친 원리는 잠정적이다. 최초 단계 이후에 훈련은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원리를 덜 잠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자신의 결단에서 원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원리에 대한 예외를 만듦으로써 이렇게 한다.[10]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행위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원리를 결단하는 데 배운 원리를 검사하여 특정 사태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자기교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운 원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지도하지만, 결코 고정된 원리가 아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도중에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특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원리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하는 원리가 이전에 접하지 않은 다른 특이한 특징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외를 결단하여 그 원리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LM*에서 이 같은 '예외에 의한 원리'는 헤어가 비판적 도덕사유 수준의 필요성을 전개하는 데 주요한 발판이 된다.

또한 헤어는 '운전교습 사례'를 가지고 원리를 배우는 단계를 구분할 때, 경험상의 대략적 규칙을 통해 원리를 배우는 방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11]

> (1) 처음에는 일정한 목적을, 이를테면 충돌의 회피, 확립하고, 지도(instruction)는 어떠한 실천이 그런 목적에 이바지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있다.
> (2)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대략적인 규칙을 가르치며, 학습자는 점차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지도는 이것을 목표로 한다.

---

10) Hare, R. M.,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Oxford UP, 1952, pp. 61-62.

11) *Ibid.*, pp. 66-67.

(1)의 방식은 운전자에게 단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할 수 있는 불편'을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만 지도한다. 그러나 운전을 배우기 위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이다. 학습자가 운전을 통해 일정한 경험을 획득할 때까지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불편으로 간주해야 할지 모른다.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불편의 회피'를 설정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행위를 지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이나 원리는 상세한 지도를 통해 그 내용을 제시할 때까지는 공허하다. 그렇다면 먼저 학습자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치고, 나중에 그 이유를 발견하도록 맡기는 (2)의 방식이 필요하다. 도덕적 직관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2)의 방식은 직관적 원리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헤어는 *FR*에서 AU와 RU가 각기 갖는 장점을 논의한다. "AU는 효용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대안들 중 최대만족을 결과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된다. 반면에, RU는 이 검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부류에 적용한다. 어느 행위가 도덕적인지를 일정한 도덕원리에 따라 평가할 때, 행위의 원리를 채택하기 위해 공리주의 검사가 적용된다. 어떤 도덕규칙이나 원리의 준수가 일반적으로 최대만족에 결과한다면, 그것은 도덕규칙이나 원리로서 수용된다."[12] 두 수준의 도덕사유에 있어서 직관적 도덕사유 수준이 요구하는 RU 방식에 의한 일반적 원리는 그 원리를 실행하는 데에서 '수용 효용(acceptance utility)'를 갖는다. 그리고 비판적 도덕사유는 행위에 대해서 사유해야 하는 수준을 일컫는데, 이 수준에서 요구되는 AU 방식에 의한 구체적 원리는 '준수 효용(observance utility)'을 갖는다.[13] 헤어는 「윤리이론과 공리주의」에

12) Hare, R. M., *Freedom and Reason,* Oxford: Clarendon Press, 1963, p. 130.

13) 여기서 observance는 두 가지로 읽힌다. (¡)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에 대한 구별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observance는 '준수'로 읽

서 두 수준의 도덕사유 체계를 맨 처음 제기한다.

> 이제 두 가지 '수준'의 도덕사유에 중대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 나는 도덕사유의 직관적 수준과 비판적 수준에, 또 이런 두 가지 수준에서 채택된 원리들에 차이를 둔다. (가) 직관적 원리들은 실천적인(practical) 도덕사유에 사용된다. 직관적 수준은 교육으로 전승될 수(impartable) 있고 '위급한 경우에 준비된 적용' 가능할 만큼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대략적 규칙과는 혼동되지 않는다. (나) 비판적 원리들은, 구체적인 사태에서 옳은 대답으로서, 완벽히 적절한 사실들의 지식에서 여유로운(leisured) 도덕사유에 의해 도달하게 되는 바이다. …[14]

앞서 논의한 *LM*에서 '예외에 의한 원리의 수정'의 필요성과 '일반적 행위 원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중, 전자는 위 인용문의 (나)와, 후자는 (가)와 관련된다. 그리고 *FR*에서 AU의 장점을 구현하는 구체적 원리들과 RU의 장점을 구현하는 일반적 원리들에 대한 논의 중, 전자는 위 인용문의 (나)로 연결된 다음 *MT*에서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에서 '준수 효용'을 산출하고, 후자는 (가)로 연결되어 '수용 효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두 수준의 도덕사유에서 비판적 원리들은 요구되는 만큼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려된 구체적 상황에서 최선의 원리들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직면하는 대부분 상황에서 사용되는 직관적 원리들은 이런 최선의 비판적 원리들의 요구

힌다. (ii)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도덕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검사한다는 의미에서 observance는 '관찰'로 읽힌다. 하지만 (i)이 주장되지 않고서는 (ii)는 불가능하므로 (i)은 (ii)를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14) Hare, R. M., "Ethical Theory and Utilitarianism," in *Essays in Eth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221. (가), (나)는 필자의 표기임.

에 일치하는 행위에 도달한다.

따라서 AU와 RU 각각의 장점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도덕사유체계가 실질적인 규범 차원에서 도덕판단론으로 전개되려면, 그것에 앞서 두 수준에서 채택되는 원리들이 서로 긴밀하게 논리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UP 체계 내에서 AU와 RU는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헤어는 *FR*에서 '해야 한다'의 보편화가능성에 입각하여 AU와 RU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먼저 AU와는 일치하고 RU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떠한 하위 원리나 규칙을 매개하지 않고서도 효용의 원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AU방식에 따라 '어느 행위가 만족을 최대화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사태는 RU에 따라 '그 행위가 그러한 부류의 행위이기 때문에 만족을 최대화한다.'라고 인식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세 사람과 방안에 있는데, 세 사람 모두의 최대 욕구는 가능한 세차게 뺨을 자주 맞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최대만족을 낳는 행위는 내가 다른 세 사람의 얼굴을 가능한 세차게 때리는 것이다. 이때, 그 행위는 어떠한 규칙도 매개하지 않고서 효용의 원리에 직접 참고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뺨을 맞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욕구하는 것일 때, 그들의 뺨을 때려야 한다.'라는 규칙이 뺨을 때리는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며, 이러한 규칙은 효용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규칙을 일반화시킬 경우, 그것은 '다른 사정이 같다면 사람들이 가장 욕구하는 것을 하라.'는 규칙이 됨으로써 효용의 원리와 동치가 된다.[15]

역으로, RU와는 일치하지만 AU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음의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보자. 어떤 사람

15) *Ibid.*, p. 132.

이 임종 시에 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이 그의 돈을 일정 방식으로 처분하겠노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그의 돈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한다면 일반적으로 만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명된다고 가정해보자. 임종 시에 한 약속을 준수하는 행위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규칙을 예시한다는 점에서는 옳다. 그러나 그 같은 약속준수는 효용의 원리에 어긋난다. 약속자는 정확히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약속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약속자 자신이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는 임종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단지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행하지 못할 약속해야 한다는 단칭처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 대부분은 속임을 당하라고 요구하는 처방을 수용할 수는 없다.[16]

따라서 RU를 입증하지만 AU와 불일치하는 사태가 존재하려면, 개별 상황에서 약속 준수의 요구는 정확히 유사한 사태에서 보편적 처방의 요구에 직접 호소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더 일반적 규칙에 호소해서만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입증은 우리가 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보편적 준수를 처방할 용의가 있는지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개별 사태들에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반적인 규칙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도덕을 뿌리째 잘라내는 것이다. 어떤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태들에 대한 수많은 개별 처방들을 함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약속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항상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C1, C2, C3 … Cn 상황에서 약속을 항상 지키도록 속박하는 것이다.[17]

이처럼 FR에서는 AU와 RU는 도덕판단의 보편화가능성으로 인

16) *Ibid.*, p. 134.
17) *Ibid.*, p. 135.

해 서로를 무너뜨려 외연적으로 일치하다고 논증한다. 하지만 AU와 RU가 도덕사유에서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4. 두 수준 내 도덕원리의 외연과 그 정당화

1)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즉, 도덕법칙이나 원리를 확립하여 우리의 행위를 안내하려는 기획에서 보편주의는 우리가 해야 할 전부를 단지 그러한 원리를 적절히 참조하여 도덕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보편주의에 대한 오해이다.

어떤 상황에서 도덕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불합리할 것이다. 우리는 개별 사태에서 원리의 내용으로서 도덕과 유관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이유가 체벌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면, 체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상황에 관한 특성들을 **구체적인 보편적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18] 논리적 논제로서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tion)과는 달리, 보편성(university)은 판단된 것이 일정한 특징들을 갖는다는 사실로서 가능하다. 어떠한 판단이 어떠한 서술을 언급할

18) Hare, R. M., "Methods of Bioethics : Some Defective Proposals(1994)," in *Objective Prescriptions and Other Essays,* Oxford: Clarendon Press, 1999, p. 134.

때, '기술적인 의미규칙'은 동일한 특징들이 고려되고 있을 때마다 동일한 기술적 단어가 동일한 특징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규칙'이다. 따라서 어느 사태에서 일정한 특징들 때문에 내려진 판단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 항상 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도덕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사항이 요구된다. 헤어는 도덕판단을 내릴 때 준수되어야 하는 원리가 단순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 보편화가능성 논제는 도덕판단이 매우 일반적인 도덕원리에 기초하여 내려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덕의 전개는 우리가 경험한 사태들의 부류를 포괄하기 위해서 예외와 제한조건을 도덕원리들에 써넣음으로써 우리의 원리를 더욱 구체화하는 데 있다. …[19]

도덕원리는 상황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사태에 적용될 정도로 너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 헤어의 윤리체계에서 보편주의는 도덕의 의미를 구성하는 기술적 의미에 대한 보편화를 통해 구체성이 더해진 원리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고려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원리를 받아들일지를 결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일반적인 도덕원리를 받아들일지를 결단하기가 더 어렵다.

여기서 '보편성(universality)'과 '일반성(generality)'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성은 일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를 위해 안스콤(Anscomb, A. E.)이 반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19) *FR*, p. 40.

원리와 결과주의자가 주장하는 원리를 대조해보자.[20] 안스콤은 "어떤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은 그와 논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21] 이러한 안스콤의 주장에는 일반적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에, 결과주의자는 안스콤이 제시하는 사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결과주의자에게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은 핵전쟁을 막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 사태로서 핵전쟁과는 무관한 사태들이다. 그래서 결과주의자의 원리는 '핵전쟁과 무관한 모든 사태에서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주의자의 원리와 안스콤의 원리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보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보편적'에서 '더 보편적인'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안스콤의 원리와 결과주의 원리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두 원리 모두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 내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성'과 '구체성(specificity)'은 정도의 문제이다. 도덕과 무관한 원리를 예로서, '땅이 젖어 있을 때 과일나무를 심지 마시오.'라는 원리는 '땅이 젖어 있을 때 사과나무를 심지 마시오.'라는 원리보다 더 일반적이고 덜 구체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원리는 매우 일반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원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런 점에서 안스콤의

---

20) Hare, R. M., "Ethical Theory and Utilitarianism," in *Essays in Eth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53.

21) Anscomb,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1958), Reprinted in W. D. Hudson (ed.), The *Is-Ought Question,* London: Macmillan, 1969, pp. 175-195 참조.

원리는 결과주의자의 원리보다 더 일반적이지만 전적으로 일반적이지는 않다. 원리에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원리에 해당될 수 있는 사태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단지 내용이 없는 원리만이 '전적으로 비구체적(unspecific)'이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일반적'일 수 있다. 안스콤이 이러한 난점을 피하는 길은, '절대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결과주의자들의 원리는 예외를 도입한다. 즉, 핵전쟁을 위협받는 사태에서 안스콤의 원리에 어떤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스콤의 원리 역시도 내용의 외연이 클 뿐이지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일반적 원리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더 일반적 원리를 받아들인 다음, 식물 → 동물 → 인간 → 죄수 등의 사태 순으로 예외를 도입함으로써 안스콤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이처럼 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안스콤의 일반적 원리'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결과주의자의 원리'를 명제를 대조해보자.

p1 :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p2 : 핵전쟁과 무관한 사태에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p1과 p2는 그 결정을 위해 개체지시(individual reference)를 포함하지 않고서 보편적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로 표현되므로 둘 다 보편적이다. p1과 p2 사이의 차이는, p1은 p2보다 더 일반적인 도덕원리이고, 역으로 p2는 p1보다 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22) Hare, *op. cit.*, pp. 53-54.

더 구체화된 도덕원리라는 점이다. 보편규칙은 "단지 간단하거나 일반적 규칙이 아니라 특정 사태들에서 제한조건(qualification)을 통해 규칙들이 복잡해지는 동시에 구체적이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이다.[23]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원리는 구체적 도덕원리보다 언급의 범위가 더 넓은데도 여전히 도덕원리에 언급된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 같은 일반성과 구체성의 차이로 보편적 처방주의 내 도덕사유에 있어서 원리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다른 사용이 존재한다.

보편적 처방주의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보편적 도덕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도덕사유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덕원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도덕원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도덕원리가 사용되지 않는 한 자기교육을 포함하여 도덕교육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도덕을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 가르침을 통해 배운다. 경험은 일정한 가르침을 채택하게 하므로 경험과 가르침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경험적 관찰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생한 사태를 숙고하여 어떤 가르침이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다."[24] 따라서 "우리가 성장한 환경과 아주 다른 환경에 갑자기 놓이지 않는 한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이전에 도덕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흔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덕원리는 익숙한 상황에서 분명한 안내를 제시한다."[25] 헤어는 도덕사유에서 이러한 일반적 도덕원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23) *FR*, p. 136.
24) Hare, *op. cit.*, p. 55.
25) *FR*, p. 40.

> …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새로운 상황에 접근해야 하고 우리의 도덕사고를 **처음부터** 행해야 한다면, 이것은 … 실제로 많은 숙고를 요하는 극도로 곤란하고 복잡한 도덕적 상황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불합리한 처방이다. … 하지만 만약 모든 도덕 물음이 이렇게 간주된다면, 우리는 … 더 고려할 여유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부터 도덕적 개발이나 배움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은 중대한 도덕 물음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한 것들에 대해서 깊게 사고한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 문제에 대한 대답에 도달할 때, 그것을 너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은 형태로 구체화하여 그것의 현저한 특징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그 만큼 생각할 필요 없이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황하여 계속 찾지 않을 것이다.[26]

우리가 특정 사태에 관한 숙고로부터 최소한 유용한 것을 배우려면, 원리가 무제한의 구체성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도덕언어의 논리는 도덕원리의 일반성이나 구체성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다른 사태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그 원리가 일반적이어야 한다. 모든 도덕 물음이 무제한 구체적이라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도덕적 개발이나 배움은 불가능해진다. 어떠한 두 가지 사태도 정확히 똑같지 않은 차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 사고의 결과들이 미래에 유익하려면 사태의 폭넓은 특성들로서 다른 사태들에서 반복되는 특징들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아주 희귀한 상황에서 그러한 원리를 어길지를 숙고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이 최선인 상황은 극히 드물다. 특정 상황에서 거짓말이 유용한 결과를 낳느냐의 여부로 거짓말의 옳고 그름을 판

---

26) *Ibid.*, pp. 41-42.

정하는 공리주의자들도 이러한 단순한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원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27] 헤어는 일반적 원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정당화를 꾀하는 무어의 방식에 동의한다. 무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용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특정한 사태에서 그 규칙이 유용할 것이라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태에서 그 규칙이 유용할 확률은 우리가 그 규칙의 무용한 예가 있다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확률보다 더 크다는 근거에서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28]

물론 일반적 원리가 무시되어야만 하는 아주 희귀한 사태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희귀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 원리는 필요하다. 공상적 사태(fantastic cases)는 자신만을 예외로 하는 '특별변론(special pleading)'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헤어가 든 예로서, 경찰관은 간상균을 퍼뜨리는 가학적 세균학자에게 고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공상적 사태'를 개발해낼 수 있다.[29] 그러나 도덕추론에서 '공상적 사태'와 '가설적 사태(hypothetical case)'는 구별되어야 한다. 보편화가능성의 요구로 판단자는 적절한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는 실제 사태와 정확히 유사한 가설적 사태를 상상하는 것은 항상 적법하다. 가설적 사태에서 개인들의 입장은 뒤바뀌지만 그 보편적 속성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도덕판단자라면 동일한 것이 가설적 사태에서도 행해져야 한다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행위를 지도하는 원리들이 공상적 사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조처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

27) Hare, *op. cit.*, pp. 57-58.

28) Moore, G. E. *Principia ethica* (Dover philosophical classics, 2004), pp. 162-163.

29) *FR*, pp. 43-45.

2) 두 유형의 규칙공리주의

헤어는 *FR*에서 AU와 RU는 도덕판단의 보편화가능성의 요구로서로 무너뜨려 외연적으로 일치한다고만 논증한다. 이후로 그는 「원리(1972)」에서 AU와 RU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을 제안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다. 그 계기는 규칙의 구체성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구체적 규칙공리주의(Specific Rule-Utilitarianism, 이하 SRU)'와 '일반적 규칙공리주의(General Rule-Utilitarianism, 이하 GRU)'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 규칙공리주의의 구별은 일반성과 구체성의 차이를 사용하면 훨씬 더 분명해진다. … 두 부류는 '구체적 규칙공리주의'와 '일반적 규칙공리주의'이다. 구체적 규칙공리주의는 구체성이 어떤 정도 허용되고, 일반적 규칙공리주의는 그 규칙이 일정한 정도의 일반성을 갖도록 요구한다.[30]

3절에서 밝혔듯이, 도덕언어의 논리와 사실 확인의 요구에 입각한 비판적 도덕사유의 수준은, (가) 매 경우 AU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무제한의 구체성'의 원리를 허용하는 보편적 처방의 원리들, (나) RU에 '제한된 구체성'을 허용함으로써 직관적 혹은 직견적 원리들을 산출한다. 그렇다면 구체성과 일반성의 차이로 본 AU와 RU의 차이가 곧바로 AU와 SRU의 논리적 차이로 주장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에서 (나)는 (가)의 요구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AU와 SRU는 논리적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RU에 의한 규칙이나 원리에 무제한의 구체성이 허락되어 보편적으로 남는 SRU라면, 이와 정확히 유사한 상황에서 충분히 구

30) Hare, *op. cit.*, p. 62.

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채택되고 준수되는지(곧, SRU)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곧, AU) 동일하다. 따라서 SRU와 AU는 실질적으로 동치의 결과를 갖는다. 물론 AU는 효용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구체적인 원리를 산출하고, RU는 효용을 행위 규칙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규칙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AU와 RU는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SRU에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U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RU의 원리에 무제한의 구체성을 허락하는 SRU는 실질적으로 AU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애초의 RU 장점을 상실한다. SRU는 RU의 한 형태임에도 일상에서 사람들의 도덕 성품 형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구체성을 갖는 일반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란 그러한 일반적 원리들을 자신에게 확고히 뿌리내린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원리를 문제 삼아 매 상황마다 복잡한 행복계산을 행하는 AU 방식은 도리어 해가 되고, 일반적인 원리의 준수가 최대 공리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원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변이를 갖더라도 유사한 사태에 적용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GRU의 방식은 직관적 도덕사유의 수준에서 요구된다. 간단한 일반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설령 일반적 원리들이 아주 희귀한 사태에서 AU의 기준에 의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일반적 원리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행위 선택의 지침이라 생각된 기준은 사람들에게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 원리들은 그 일반적 주입이 최선이 되는 '수용 효용(acceptance-utility)을 갖는다. 그러한 일반적 원리에 따라 사람들은 더한 사유를 행하지 않고서도 최적인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GRU는 AU의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다.

이처럼 SRU는 AU와 실질적으로 일치하고, 또 GRU는 AU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용을 갖는다. 그 때문에 우리는 SRU와 GRU가 두 수준의 도덕사유에서 갖는 인식론적 위상과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 도덕사유의 수준에서는 SRU가 요구되고 직관적 도덕사유의 수준에서는 GRU가 요구될 때, 헤어는 SRU와 GRU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 비판적 사유자는 AU나 SRU의 방식으로 사태들을 검토하며, 이런 방식들에 기초하여 직관적 단계에서는 GRU 방식으로 사용을 위한 일반적 직견적 원리들을 선택한다.[31]

메타윤리적 차원의 UP으로부터 실질적 윤리 차원의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이 전개될 때, 비판적 도덕사유는 관련된 행위의 특성들을 완전히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일 수 있는 AU 방식을 가지고 직관적인 도덕사유 수준에서 직견적 원리들을 선택하고, 그 원리들 사이의 대립을 판결해준다. 즉, AU는 직관적 사유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직견적 규칙을 정당화하고, 규칙들 간에 대립이나 기존의 일반적 규칙으로 다룰 수 없는 특수한 도덕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채택해야 하는 이상적 관망자(idea observer)로서 역할을 할 때는 AU와 실질적으로 동치인 SRU 방식에 따라 규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때, SRU는 비판적 사유에 의한 AU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할 구체적 원리들은 우리의 지식과 시간의 한계 내에서 상세하고 신중한 사유로 성취된다. 우리가 수용할 최선의 일반적 원리들을 결정하려면 그 원리들을 구체적인 실제 혹은 가설 상황에서 검사해보아야 한다. 이에 비해, 직관적 사유 수준

31) *Ibid.*

에서 요구되는 GRU는 비판적 사유에 의해 선정된 원리나 규칙을 개별 사태에 적용하여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판단과 행위를 AU에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AU와 GRU는 우리의 도덕사유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신중하게 구별할 경우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32] AU와 GRU는 각 수준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유는 직관적 사유에 대한 인식론적 우선성을 갖고서 AU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AU의 역할을 제한하는 직관적 도덕사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RU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5. 맺는말

윤리학에서 실재론적 접근이 우세한 현 시점에서, 비기술주의는 우리가 도덕적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지의 본성, 곧 도덕판단의 합리적인 내적 동기를 밝힐 수 있는 근간이다. 그동안 국내의 헤어 관련 논의는 그의 비기술주의 윤리학의 핵심을 이해하여 소개하는 데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도덕에서 합리성의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합리적인 도덕 실천을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합당한 도덕원리나 규범을 발견해내는 문제로 집중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장치로서 보편적 처방성, 그로부터 공리주의 추론으로의 이행, 그리고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의 정당화 등에 대해서 제기되어온 많은 반론과 그 대응을 발전된 형태로 정밀하게 보여주는 분석윤리학적 작업이 여전히 요구되며 중요하다.

---

32) *Ibid.*, p. 65.

메타윤리학적 차원의 논의를 그대로 규범윤리학으로 확장하는 윤리학자는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헤어가 거의 유일하다. 연구자가 보기에, 현대윤리학에 끼친 그의 최대 공헌은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를 밝혀내어 그것을 계기로 두 수준의 도덕사유론을 제안한 점이다. 메타윤리로부터 실질적・규범적인 윤리학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일관되게 언어분석적 방법을 동원하여 도덕의 의미와 논리로서 도출해낸 보편적 처방성을 가지고 규범 수준에서 공리주의가 출현하는 방식을 보여준 후 도덕사유의 두 수준론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자가 이러한 두 수준의 공리주의적 도덕사유가 정당화되는 논변을 다루어 밝힌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이론적 대립을 조화하는 전일적인 공리주의적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이론으로서 공리주의의 성패와 직결된다. 헤어의 두 수준론은 공리주의적 사유와 그 요구에 따른 적합한 도덕원리를 발견해내는 논의이다. 『도덕의 언어』에서 '예외에 의한 원리 수정'의 필요성은 비판적 도덕사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주요한 발판이 된다. 그리고 『자유와 이성』에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외연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는 논의는 두 수준의 도덕사유를 결과주의 체계 내 행위에 대해서 '해야 하는 방식'과 '사유해야 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전기를 마련한다.

2. 헤어는 '일반성(generality)'은 '구체성'(specificity)과 대조되며, '보편성(universality)'은 '단칭(singularity) 혹은 특칭(particularity)'과 대조되지 '일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가지고 보편주의(universalism)를 방어한다. 국내의 윤리학적 논의에서 '보편성'과 '일반성'의 논리적 차이를 혼동하는 사례는 빈번한데, 특히 도덕교육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헤어가 『도덕의 언어』에서 논증했듯이, 도덕추론은 성격상 원리로부터 개별판단으로 진행하는 연역추론이다. 그 때문에 실천적인 삼단논법에서 대전제에 해당하는 도

덕원리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이어야만 한다. 단지 어느 상황에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외연이 넓은 일반적인 도덕원리가 도덕추론의 과정에서 대전제가 된다면,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예외를 항상 허용하는 직견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개별판단이 연역되어 내려질 리는 없다. 그 경우, 예외를 갖는 원리로부터 예를 낳는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논리적 논제로서 보편화가능성과 달리, '보편성'은 판단된 것이 일정한 특징들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덕판단을 내리는 이유를 구성하는 상황에 대한 일정한 특징들은 구체성을 띠는 보편적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에서도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고려한 처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성'과 '구체성'은 정도의 문제이다. 이 차이로 보편적 처방주의 내 도덕사유에 원리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다른 사용이 존재한다. 우리가 원리를 다른 사태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일반적이어야 한다. 모든 도덕물음이 무제한 구체적이라면 경험으로부터 도덕적 계발이나 배움은 불가능해진다. 설령 일반적 원리가 무시되어야만 하는 아주 희귀한 사태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 원리가 필요하다.

3. 헤어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를 밝힌다. 만약에 규칙공리주의에 의한 규칙이나 원리에 무제한의 구체성이 허락되어 보편적으로 남는 구체적 규칙공리주의라면, 이와 정확히 유사한 상황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채택되고 준수되는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는 실질적으로 동치인 결과를 갖는다.

두 수준론에서 비판적 도덕사유는 관련된 행위의 특성들을 완전히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일 수 있는 행위공리주의 방식을 가지고 직관적 도덕사유의 수준에서 직견적 원리들을 선택하며, 이런

원리들 간에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 판결해준다. 그리고 직관적 사유수준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규칙공리주의는 비판적 사유에 의해 선정된 원리나 규칙을 개별적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판단과 행위를 행위공리주의에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도덕은 규칙에 일정 수준의 일반성을 요구하는 원리와 관련되는 바, 구체적 규칙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최대 공리를 갖는 규칙을 산출하여 우리의 행위를 규제한다. 이와 같이 도덕사유에서 작동하는 역할이 신중하게 구별될 경우, 행위공리주의와 일반적 규칙공리주의는 완전히 양립가능하다.

참고문헌

강문석, 「헤어의 비기술주의에서 객관적 처방이 왜 가능한가?」, 새한철학회, 『철학논총』72집 제2권, 2013, pp. 183-213.

_____, 「보편적 처방주의에 나타난 도덕의 합리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4.

류지한, 「두 수준의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55집, 2006, pp. 201-233.

임덕준, 「결과주의로서의 공리주의」,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12집 제1권, 1988, pp. 181-199.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5.

Anscomb,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1958), Reprinted in Hudson, W. D. (ed.), *The Is-Ought Question,* London: Macmillan, 1969, pp. 175-195.

Frankena, W. K., *Ethics 2nd* Englewood Cliffs: Prentic-Hall, Inc., 1973.

Hare, R. M.,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Oxford UP, 1952.

_____, *Freedom and Reason,* Oxford: Clarendon Press, 1963.

_____, *Moral Thin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81.

_____, "Principle", in *Essays in Eth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p. 49-65.

_____, “Ethical Theory and Utilitarianism”, in *Essays in Eth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p. 212–230.

_____, “Methods of Bioethics : Some Defective Proposals”, in *Objective Prescriptions and Other Essays,* Oxford: Clarendon Press, 1999, pp. 132–150.

Hudson W. D., *Modern Moral Philosphy,* Macmillan Press, 1983.

Moore, G. E., *Principia ethica,* Dover philosophical classics, 2004.

Shaw, William H., *Contemporary Ethics: Taking Account of Utilitarianism,*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 Inc. 1999.

Williams, Bernard, *Ethics and the Limit of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P, 1985.

_____, “The Structure of Hare’s Structure”, in Seanor, D. & Fotion, N. (ed.), *Hare and Critics,*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p. 185–196.

(**투고일**: 2016. 10. 30 **심사완료일**: 2016. 12. 5 **게재확정일**: 2016. 12. 9)

강문석
소속: 인하대학교 철학과 강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35
(더샵마스터뷰 2206동 2602호)
전자우편: jakang-phil@hanmail.net

[Abstract]

The Vindication on the Two-Level Utilitarianism

Kang, Moon-Seok

This study deals with R. M. Hare's non-descriptive ethics that pursues rationality in moral judgement and moral thinking. After he discussed the transition from universal prescriptivity to utilitarian reasoning, his ethics that pursues rationality of moral reasoning through logic and facts develops the two-level-theory in order to justify utilitarian reasoning. If his two-level-theory can be coherently consistent of utilitarian moral thinking system, it must show that act-utilitarianism and rule-utilitarianism within the two-level can be extensively compatible and accord substantially.

For it, this study discusses as follows. Firstly, I'll examine the merit of act-utilitarianism and its limitation, subsequently the merit of rule-utilitarianism which comes out in order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act-utilitarianism and its limitation. Secondly, I'll inquire the core of argumentation that Hare establishes the two-level utilitarianism to preserve the merit of act-utilitarianism and rule-utilitarianism respectively, then I'll reveal the idea that act-utilitarianism and rule-utilitarianism within the system of universal prescriptivism can be logically compatible. Finally, by clarifying logical difference in universality and generality, I'll maintain that the two-level utilitarian moral thinking which act-utilitarianism and rule-utilitarianism coincides substantially can be developed.

Key words: universal prescriptivity, the two-level, generality, specificity, act/rule-utilitarianism